

# 신용정보 활용체제

2022. 02. 04. 개정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이하 '당사'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1조 등에 따라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 1)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업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업종)

#### 나. 신용거래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설발급정보, 개인대출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사고회원정보

#### 다. 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해당정보의 관련인 정보를 포함하여 이하 “연체정보등”이라 한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미수발생정보,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정보

#### 라.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일반정보(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자, 경영방식 등 회사의 개황), 재무정보(재무상태, 재무비율), 비재무정보(상장유무,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 마. 공공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임금의체납(불), 법원의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조달청의 정부납품 실적정보, 사망자정보, 국세청 모범납세자 정보 등

2) 이용 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채권추심
- 마케팅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 제공받는 자,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신용정보원</li> <li>- NICE평가정보</li> <li>- 기타 법률에 의한 제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정보</li> <li>- 신용거래정보</li> <li>- 금융질서문란정보</li> <li>- 신용능력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li> <li>-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li> </ul>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거래종료 후 5년(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보관)

2) 파기절차 및 방법

거래종료 후 5년 경과 시 파기(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보관)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업자가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부정확 정보 삭제·정정청구권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 또는 열람한 정보주체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3)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권 및 통지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조회 의뢰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주체는 앞으로 당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 이용·제공 내역을 자신에게 통지해줄 것을 당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회 또는 통지에 드는 비용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을 철회할 수 있고, 당사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 후 신용정보의 종류에 따른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삭제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6)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및 전송요구 철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 등에서 정한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당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8)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권

신용정보주체는 당사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자동화평가의 결과 및 주요기준,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자동화평가의 방법을 통해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당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

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고객별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고객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당사의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담당부서

구분	성명 /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김동욱	02-3779-3544	dwkim@sangsanginib.com
신용정보관리 담당부서	소비자보호팀	02-3779-3312	coosumer@sangsanginib.com

## 7.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변경

1) 이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2. 02. 04. 부터 적용됩니다.

2) 신용정보 활용체제 변경일

2021. 03. 22. / 2021. 04. 01. / 2021. 07. 22. / 2021. 12. 13. / 2022. 02. 04